

중앙하이츠 원종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678-2399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1년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6.05.27 로부터)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5.08.(금)	2026.06.19.(금)	2026.06.24.(수)	2026.06.29.(월)	2026.07.04.(토)	2026.07.06.(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19.(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57**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08.(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78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6.24.(수)	2026.06.29.(월)	2026.07.04.(토)	2026.07.06.(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6 3층)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5.27.)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6-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13층 1개동 총 172세대 [조합 94세대, 일반 78세대] 중 잔여 28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수
2026910157	01	059.6000E	59Ea	1	101	1205
	02	060.2700E	60E	11	101	305, 405, 705, 805, 905, 1105
					103	405, 505, 705, 805, 905
	03	063.3700D	63D	8	101	304, 604, 904, 1004
					103	304, 604, 804, 1204
	04	066.7400G	66G	3	102	501, 604, 1004
	05	069.5600A	69Aa	5	103	301, 701, 801, 1101, 1301
합계				2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059.6000E	59Ea	1	101	12	1	200,222,000	278,778,000	479,000,000	5,000,000	18,95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67,650,000
060.2700E	60E	11	101,103	3,4,5	4	193,116,000	268,884,000	462,000,000	5,000,000	18,1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61,700,000
			101,103	7,8,9	6	196,878,000	274,122,000	471,000,000	5,000,000	18,55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64,850,000
			101	11	1	201,058,000	279,942,000	481,000,000	5,000,000	19,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063.3700D	63D	8	101,103	3,6	4	201,058,000	279,942,000	481,000,000	5,000,000	19,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101,103	7,8,9	2	204,820,000	285,180,000	490,000,000	5,000,000	19,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101	10	1	209,000,000	291,000,000	500,000,000	5,000,000	2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75,000,000
			103	12	1	209,585,200	291,814,800	501,400,000	5,000,000	20,07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50,140,000	175,490,000
066.7400G	66G	3	102	5,6	2	212,344,000	295,656,000	508,000,000	5,000,000	20,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02	10	1	221,707,200	308,692,800	530,400,000	5,000,000	21,52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53,040,000	185,640,000
069.5600A	69Aa	5	103	3	1	224,466,000	312,534,000	537,000,000	5,000,000	21,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03	7,8	2	229,064,000	318,936,000	548,000,000	5,000,000	22,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103	11	1	234,247,200	326,152,800	560,400,000	5,000,000	23,02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56,040,000	196,140,000
			103	13	1	234,372,600	326,327,400	560,700,000	5,000,000	23,035,000	56,070,000	56,070,000	56,070,000	56,070,000	56,070,000	56,070,000	196,245,000

※ 전체 동은 주동이 결합된 복합 주동 형태로 한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별도의 주동으로 표현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01a는 101동, 101b는 102동, 101c는 103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59.6000E	060.2700E	063.3700D	066.7400G	069.5600A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59Ea	60E	63D	66G	69Aa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확장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약 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59Ea	9,100,000	1,820,000	7,280,000
60E	9,100,000	1,820,000	7,280,000
63D	10,200,000	2,040,000	8,160,000
66G	10,500,000	2,100,000	8,400,000
69Aa	12,000,000	2,400,000	9,600,000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5.08.)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 VAT포함)

주택형	선택	실내기 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제조사명
전타입	1안	2	거실 + 침실1	4,930,000	삼성전자
	2안	3	거실 + 침실1 + 침실2	6,800,000	
	3안	4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8,440,000	

2) 가전기기

(단위 :원 / VAT포함)

품목	사양	금액	비고
전기오븐	[삼성]NQ36A6555CK	400,000	-
하이브리드 쿡탑(3구)	[경동나비엔]ERG-5003	820,000	-
냉장고장 +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삼성] 1도어(키친핏) / R40C7995AP, RZ34C7965AP, RQ34C7845AP	5,630,000	-

3) 붙박이장

(단위 :원 / VAT포함)

약식표기(타입)	금액	비고
59Ea	830,000	침실 2
60E	830,000	침실 2
63D	830,000	침실 2
66G	830,000	침실 2
69Aa	830,000	침실 2

4) 현관중문

(단위 :원 / VAT포함)

약식표기(타입)	금액	비고
59Ea	930,000	슬라이딩도어, 다크그레이 (전타입 공통)
60E	930,000	
63D	930,000	
66G	890,000	
69Aa	990,000	

5) 주방 상품 및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타입)	금액	비고
59Ea	900,000	-
60E	900,000	
63D	930,000	
66G	900,000	
69Aa	580,00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5.08.)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29.(월) ~ 2026.07.08(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6.29.(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 입주자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가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계약 / 서류제출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제출처 : 원종동성락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해외체류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반드시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추가해당자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및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대리인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인감도장		날인용
전세 피해자 제출 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임대차 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7.06.(월)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 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해당 세대의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아파트 공급대금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본인	•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가능)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7.07.(화) 10:00~16:00 /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 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원종동성락아파트가주주택정비사업조합	씨에이이앤씨 주식회사	중앙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21171-0008346	124511-0002567	124311-001067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3, 2층(원종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19, 3층 3-1호(도우빌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해안북로 157-3, 101호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중앙하이츠원종역.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6 3층

■ 분양 문의 : 032-678-2399

※ 본 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